

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
제285회 임시회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
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2. 2.

복지문화 위원회
전문위원

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22. 2.

복지문화위원회

1. 검토과정

- 안 건 명: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교직원 권리 보호에 관한 조례안
- 발 의 자: 안영란 의원 외 4명
- 발의일자: 2022. 1. 24.(월)
- 회부일자: 2022. 1. 24.(월)
- 검토기간: 2022. 1. 25.(화) ~ 2. 3.(목)

2. 제정이유

-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, 인권증진과 건강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통해 보육의 질을 향상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목적,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1조~안 제3조)
- 나.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·시행, 실태조사 실시에 대하여 규정함(안 제5조 및 안 제6조)
- 다. 지원사업의 종류 및 행정적·재정적 근거를 명시함(안 제7조)
- 라.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대해 규정함(안 제8조)
- 마. 협력체계 구축에 대해 규정함(안 제9조)

4. 검토의견

- 본 제정조례안은 보육현장에서 발생하는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침해를 예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

고, 학부모와 상호소통을 통한 안전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4항은 “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”고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권리보호를 의무화하고 있음.
- 2013년 무상보육이 실시되면서 어린이집 등을 다니는 아이들이 늘어 영유아¹⁾ 인구의 약 90% 이상이 만 1세부터 어린이집을 다니고 있으나 보육체계 및 보육서비스 부족으로 보호자의 염려가 늘어나고 있음.
- 특히 자기표현이 서툰 영유아를 대신하는 보호자의 우려로 인해 보육 현장에서 보육교직원의 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으며, 국가 인권위원회(2013)에 따르면 부당한 경험을 받은 보육교사의 46.9%가 그냥 참는다고 응답했음.
- 또한 한국보육진흥원(2020)에서 실시한 「보육교사 권리보호 인식조사」에 따르면 보육교사의 68.3%가 마찰·갈등의 경험²⁾이 있고,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응답자의 61.9%가 참거나 하소연할 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음.
- 이처럼 열악한 보육환경으로 인해 2018년 10월 김포의 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 등의 사건으로 보육교사를 잠재적 범죄자도 보는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극단적 선택을 했고, 2020년 6월 학부모로부터 괴롭힘을 당한 교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음.
- 이에 따라 보육현장에서 보육교직원에 대한 과도한 권리침해를 방지하고, 사회적 인식 개선을 통해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함.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1호에 따라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
2) 보육교사의 마찰·갈등은 학부모와 마찰·갈등이 44.0%, 동료교사와 마찰·갈등이 38.7%, 원장과 마찰·갈등이 26.0%로 나타났으며, 학부모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가 29.0%, 다른 어린이 집도 마찬가지이니 혼자서 참는다가 18.5%, 문제제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고 문제교사로 낙인될 것 같아 참는다가 14.4%로 나타남.

-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 저촉됨이 없고, 달서구 내 274개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는 2,786명에 달하는 보육교직원의 권익보호를 통해 올바른 보육환경을 조성하고 주민의 복리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한다는 점에서 적법하게 제정된 것으로 사료됨

□ 대구광역시 달서구 어린이집 및 보육교직원 현황

(2022년 1월 기준)

구분	계	국·공립	사회복지법인	법인단체	민간	가정	직장
어린이집	274	39	18	2	102	106	7
보육교직원	2,786	465	361	37	1,268	567	88

관계법령

□ 영유아보육법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유아”란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을 말한다.
2. “보육”이란 영유아를 건강하고 안전하게 보호·양육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는 어린이집 및 가정양육 지원에 관한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.
3. “어린이집”이란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보육하는 기관을 말한다.
4. “보호자”란 친권자·후견인, 그 밖의 자로서 영유아를 사실상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5. “보육교직원”이란 어린이집 영유아의 보육, 건강관리 및 보호자와의 상담, 그 밖에 어린이집의 관리·운영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와 그 밖의 직원을 말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특별자치시장·특별자치도지사·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영유아의 보육을 위한 적절한 어린이집을 확보하여야 한다.

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교직원의 양성,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제6조(보육정책위원회) ①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·사업·보육지도 및 어린이집 평가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, 특별시·광역시·특별자치시·도·특별자치도(이하 “시·도”라 한다) 및 시·군·구(자치구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. 다만, 지방보육정책위원회는 그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의 위원이 제2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시·도 또는 시·군·구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보육정책위원회”라 한다)의 위원은 보육전문가,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,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,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.
- ③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□ 대구광역시달서구 영유아 보육 조례

제4조(설치) 구청장은 영유아보육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보육정책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제6조(기능) 위원회는 대구광역시 달서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의 보육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보육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2. 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및 운영 위탁 등에 관한 사항
3. 보육비용에 관한 사항
4. 그 밖에 보육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